

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9. 4. 2

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9. 4. 3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70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(1999. 4. 13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회계과장 성광식)

가. 제안이유

○ 행정규제기본법 시행(1998. 3. 1)에 따라 국가의 행정규제 폐지 또는 완화 시책에 부응코자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불명확한 사항 또는 민원인에게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조항을 완화 또는 폐지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은닉재산 신고시 인감증명서 및 각서를 제출토록 한 조항 폐지(안 제6조제3항)
-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 붙이는 조건 중 "사용허가 표지부착"폐지(안 제14조제6호)
- 청사 설계시 설계의 기준 및 규모에 관한 다음 사항 폐지(안 제47조)
 1.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

- 2. 수평, 수직 증축이 가능한 설계
- 3. 철근 콘크리트 및 냉·난방시설 완비
- 4. 경제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구조
- 5. 청사 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

○ 청사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하는 조항 폐지(안 제48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사용허가 표지부착이 무슨 말입니까?	○ 국유지 등 임대시 임대하면 그곳에 표찰을 붙여 누가 몇 평방미터를 사용하고 있다는 표지인데 이제 불필요하기 때문에 없애는 것입니다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 123 호
의결년월일	99. 4. 15. (제70회)

제출년월일 : 1999. 4. 2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제안이유

- 행정규제기본법 시행(1998. 3. 1)에 따라 국가의 행정규제 폐지 또는 완화 시책에 부응코자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불명확한 사항 또는 민원인에게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조항을 완화 또는 폐지코자 함

□ 주요골자

- 은닉재산신고시 인감증명서 및 각서를 제출토록한 조항 폐지(안 제6조제3항)
-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 붙이는 조건 중 “사용허가 표지부착” 폐지(안 제14조제6호)
- 청사 설계시 설계의 기준 및 규모에 관한 다음 사항 폐지(안 제47조)
 1.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
 2. 수평, 수직 증축이 가능한 설계
 3. 칠근콘크리트 및 냉·난방시설 완비
 4. 경제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구조
 5.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
- 청사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하는 조항 폐지(안 제48조)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중 “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은 후”를 삭제한다.

제14조제6호를 삭제하고, 동조 제7호 및 제8호를 제6호 및 제7호로 한다.

제47조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하고, 동조 제4호를 제2호로 하며, 동조 제5호 내지 제7호를 삭제한다.

제48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) ①~②(생략) ③보상금은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은 후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	제6조(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) ①~②(현행과 같음) ③보상금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 직접 신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<p>직접 신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</p> <p>④~⑤(생략)</p> <p>제14조(사용허가 조건) (생략)</p> <p>1.~5. (생략)</p> <p>6. <u>사용허가 표지부착</u></p> <p>7.~8. (생략)</p> <p>제47조(청사의 설계)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</u></p> <p>3. <u>수평, 수직 중축이 가능한 설계</u></p> <p>4. (생략)</p> <p>5. <u>철근콘크리트 및 냉·난방시설 완비</u></p> <p>6. <u>경제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구조</u></p> <p>7. <u>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</u></p> <p>제48조(도 지방건설물기술심의위원회 심의) <u>청사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u></p>	<p>④~⑤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4조(사용허가 조건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~5. (현행과 같음)</p> <p>(삭제)</p> <p>6.~7. (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)</p> <p>제47조(청사의 설계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(삭제)</p> <p>(삭제)</p> <p>2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 <p>(삭제)</p> <p>(삭제)</p> <p>(삭제)</p> <p>(삭제)</p> <p>(삭제)</p> <p>(삭제)</p>
---	---